

상담센터 상담 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조(상담서비스) ① (생략)</p> <p>② 상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한다: <u>학업 스트레스, 진로, 대학생활 적응, 정서적 어려움, 대인관계, 가족, 행동 및 습관, 실존, 성격, 성정체성,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문제 등.</u></p>	<p>제2조(상담서비스) ① (현행유지)</p> <p>② <u>상담 서비스는 학업 스트레스, 진로, 대학생활 적응, 정서적 어려움, 대인관계, 가족, 행동 및 습관, 실존, 성격, 성정체성, 성희롱·성폭력 관련 피해구제 등을 대상으로 한다.</u></p>	<p>단순 문구 변경</p>
(신설)	<p><u>제2조의2(상담 서비스의 특례) ① 본 대학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명백하여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상담센터가 그 권리 구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상담센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센터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내·외 유관기관에 대한 권고 또는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침해 여부 및 구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「대한민국헌법」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를 준거로 삼는다.</u></p> <p><u>③ 상담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권고 또는 협조요청 이전에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교내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되, 그 이행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상담센터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상담서비스 특례 근거 마련 : 필요시 일반적인 상담 범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</p>
(신설)	<p><u>제2조의3(상담 서비스를 위한 자문) ① 상담센터는 본 대학 구성원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자 이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 및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서 상담센터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 및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서 상담센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안에 관한 조사 등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.</u></p>	<p>상담서비스를 위한 자문위원 운영 근거 마련</p>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00월 0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